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정 창 호*

목 차

- I. 서론
- II.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
 - 1. 개관
 - 2. 담보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의 규정
 - 3. 지식재산권 자체의 실행
 - 4. 라이선서의 권리의 실행
 - 5. 라이선시의 권리의 실행
 - 6.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유형자산의 실행
- III.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순위
 - 1. 개관
 - 2. 담보법 규정
 - 3. 담보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 4. 양수인 또는 라이선시와의 우선순위
 - 5. 라이선서 담보권자와 라이선시 담보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 6. 판결상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 IV. 결론

* 유엔재판관,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초록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한 금융기회의 확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지식재산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담보법”이라 한다)”은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들의 준용과 해석에 맡겨 두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담보거래 입법지침(이하 “입법지침”이라 함)”을 2007년 채택하였고,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이하 “부속서”라 함)”를 2010년 채택하였는바, 입법지침과 부속서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설정, 제3자 대항력, 등록, 우선권, 실행 등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별로 담보법,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입법지침, 부속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담보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 및 개정방향까지 제시하였는바, 특히 사적처분을 통한 처분, 로열티 수령권한 담보제공, 통상적 사업활동에 기한 우선순위 예외 등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제안에 기초하여 앞으로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실무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러한 논의들이 추후 담보법 지식재산담보권 부분의 개정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지식재산담보권, 실행과 우선순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담보거래 입법지침,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 비사법적 처분, 로열티 수령권한, 통상적 사업활동

I. 서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한다는 것은 아직 생소한 법현상이다. 유일하게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도 아직 제한적인 범위의 지식재산권만이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¹⁾에서 이미 논의를 마쳤다는 점도 무척 드문 경우이다. 무역관련 법규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보통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지만 나라마다 규율방식이 다른 법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그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이외 자산의 담보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유엔도 이미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07년 동산과 채권 및 지식재산권을 모두 담보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담보거래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2007, 이하 “입법지침”이라 함)”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위 입법지침 권고 4(b)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담보활용과 관련하여 입법지침의 내용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이나 입법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이하 “지식재산권 관련법규”라 함)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입법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³⁾ 입법지침의 지식재산권에의 적용에 많은 해석상의 문제점을 남겨두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존재, 유효성, 내용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당연히 지식재산권 관련법규만을 따르면 되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담보설정, 제3자 대항력, 우선순위, 실행 등에 관하여는 입법지침에 자세한 내용을 두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의 내용들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

1) 홈페이지는 <http://www.uncitral.org>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칭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 번역하고 있으나, 유엔의 여섯 가지 공용어 중 하나인 중국어로는 聯合國國際貿易法委員會로 번역되고 있다.

2) UNCITRAL,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2010, para. 1.

3) UNCITRAL,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2007, Recommendation 4. Notwithstanding recommendation 2, the law should not apply to: (b) Intellectual property in so far as the provisions of the law are inconsistent with national law o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담보활용과 관련하여 입법지침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다양한 입법례의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와 비교를 함으로써 입법지침과의 충돌여부 및 그 대응방안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입법지침 채택 직후 지식재산권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논의를 새로 시작하여 2010년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2010, 이하 “부속서”라 함)”를 완성하여 채택하였다.

입법지침이나 부속서 모두 국제협약과 같은 강제력은 없고, 입법국들로하여금 자국의 담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지침과 부속서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각국의 입법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될 경우 이를 공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고는 해당국 입법의 국제적 신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지침이나 부속서의 실질적 중요성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12. 6. 11.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담보법”이라 한다)”은 동산담보나 채권담보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담보권과 관련하여서는 직접 규율하기보다는 동산담보 규정이나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앞으로 실제 적용과정에서 많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결국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에서 마련한 입법지침과 부속서의 내용들은 당장 필요한 우리나라 담보법의 해석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나아가 폭넓은 공감대 이루어질 경우 추후 담보법의 지식재산권 부분 개정작업에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⁵⁾

4) UNCITRAL, op. cit.(note 2), para. 4.

5) 필자는 부장판사로 임명되던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외교통상부 사법협력관으로 파견되어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대표로 지식재산담보권 논의를 포함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였고, 기타 관련 국제법률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하였다. 그리고 사법협력관 임무를 마치고 우리나라 법원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 국제상거래팀을 맡으면서 유엔재판관 임명을 받은 2011년 8월까지 우리나라 대표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많은 주제들 중에서도 특히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논의는 필자를 포함한 우리

이하에서는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입법지침과 부속서 내용 중에서도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 및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석(commentary) 및 권고(recommendations) 내용을 설명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담보법 및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와의 비교를 통하여 담보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 및 개정방향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

1. 개관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의 처분 등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후 채무불이행시 그 실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로는 지식재산권 자체, 라이선서의 권리, 라이선시의 권리, 지식재산권 활용된 유형자산 등이 거론된다.⁶⁾

우선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제약회사가 회사 소유의 특허권이나 특허출원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바로 지식재산권 자체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라이선서의 권리가 담보로 제공되어 실행되는 경우로서, 특히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라이선서의 입장에서 라이선시로부터 수령하는 로열티 수령권한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만화캐릭터 저작권을 소유한 만화출판회사가 라이선스설정계약에 기한 로열티 수령권한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라 대표단이 많은 기여를 하면서 회의를 주도하였고, 특히 필자는 2009년 3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선임연구원과 함께 제네바 소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담보법 입법과정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6) UNCITRAL, op. cit.(note 2), paras. 89, 233.

원칙적으로 로열티 수령권한은 지식재산권 자체에 포함되는 대금이나 수익(proceeds)으로 해석되므로 지식재산권 자체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포함되어 실행의 대상이 된다.⁷⁾ 그러나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라이선스설정계약에 기한 로열티 수령권한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담보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국제거래에서의 채권양도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에 비추어 보면 로열티 수령권한을 별도의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⁸⁾ 로열티 수령권한만을 분리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채무자인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또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로열티 수령권한은 담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라이선스설정계약에 기한 로열티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비록 지식재산권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의 경우는 별도의 채권인 로열티 수령권한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담보에 관한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설정계약에 기하여 라이선스를 획득한 라이선시의 권리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라이선스설정계약에 기한 라이선시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위의 라이선시가 서브라이선서로서 서브라이선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한 서브로열티 수령권한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라이선스설정계약에 기한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생산한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명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라이선스설정계약에 기하여 제조한 청바지 재고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유형자산만이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고 지식재산권 자체는 담보와 무관

7) Ibid., para. 92.

8) Ibid., para. 98. 협약의 공식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이다. 로열티 수령권한에 대한 국제적 해석동향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부속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위 협약 채택하지 않았다.

하므로 부속서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거래실무에 있어서 라이선스로 활용된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담보실행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와 연관된 여러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부속서의 내용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비록 지식재산담보권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원칙적으로 위의 경우는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산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담보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의 규정

담보법에서는 제60조에서 지식재산권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담보법 제61조에서는 성질과 지식재산권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 규정(제21조 제2항 제외)과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 권리처분 제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담보법 동산담보권 규정과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규정 중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생각할 수 있다.

- ① 제9조 불가분성: 채권 전부 변제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 행사한다.
- ② 제11조 과실에 대한 효력: 담보목적물 압류 후 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같은 취지의 규정이 특허법 제123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57조, 상표법 제63조,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반도체배치설계법 제16조 2항 등에도 들어 있다)
- ③ 제14조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담보권설정자가 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도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같은 취지의 규정이 특허법 제123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57조, 상표법 제63조,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반도체배치설계법 제16조 제2항 등에도 들어 있다.)

④ 제21조 제1항 실행방법: 담보목적물은 경매청구를 통하여 처분한다.

3. 지식재산권 자체의 실행

1) 법원경매 및 사적처분

(1) 사적처분 허용여부

담보법 제61조에 의하면, 담보법 제21조 제2항에 기하여 동산담보의 실행에 인정되는 직접 변제충당이나 매각대금 변제충당의 방법을 통한 사적처분은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에는 준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담보법 하에서는 직접 변제충당이나 매각대금 변제충당이 불허되므로 법원경매를 통한 사법적 실행만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입법지침과 부속서에서는 권고 제148조⁹⁾와 제160조를 통하여 법원 경매와 같은 사법적 실행 외에 지식재산권 판매 및 처분 또는 라이선스설정 같은 비사법적 처분(extrajudicial disposition)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라이선스 설정을 통한 실행은 *nemo dat* 원칙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담보설정 전에 특정 지역 및 기간 동안 전용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그 지역 및 기간에 대한 라이선스 설정방법을 통한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¹⁰⁾

담보법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실무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동산담보에 인정되는 사적처분까지 허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염려

9) UNCITRAL, op. cit.(note 3), Recommendation 148 (Extrajudicial disposition of an encumbered asset) The law should provide that, after default, a secured creditor is entitled, without applying to a court or other authority, to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lease or license an encumbered asset to the extent of the grantor's rights in the encumbered asset. Subject to the standard of conduct provided in recommendation 131, a secured creditor that elects to exercise this right may select the method, manner, time, place and other aspects of the disposition, lease or licence.

10) UNCITRAL, op. cit.(note 2), para. 237.

하여 법원경매를 통한 처분만을 인정하고 사적처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¹¹⁾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채권자가 주로 금융기관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지식재산권에서 비롯되는 라이선스설정계약 등을 고려할 때 실행과정에서의 우선순위와 효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원경매를 통한 처분보다는 금융기관의 사적처분을 통한 유연한 처분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고려할 때,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원경매보다 사적처분을 통한 실행이 많은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지침과 부속서에서도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적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추후 담보법 개정논의 과정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적처분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효력범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에도 동산담보의 과실에 관한 효력(제11조) 및 물상대위(제14조) 규정들은 준용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로열티 수령권한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이상 로열티 수령권한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공용징수로 인한 보상금 등에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에서는 개량된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추후 개량된 지식재산권까지 당연히 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산담보에 관한 규정 중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이 그 부합물에게 미치도록 하는 규정(담보법 제10조)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담보권에는 준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담보권자로서는 담보권 설정계약시 개량된 지식재산권까지 담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개량된 지식

11) Ibid., paras. 33, 34.

재산권에까지 담보권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¹²⁾

(3) 양수인의 지위

법원경매의 경우는 물론 사적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행절차를 통하여 담보권자가 당연히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경매의 경락인이나 사적처분을 통한 양수인이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권자도 위의 처분과정을 통하여 경락받거나 취득하여 자신이 양수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지침과 부속서에서는 권고 제161조 및 제162조를 통하여 이러한 양수인은 실행 담보권 및 후순위 담보권의 제약이 없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나, 선순위 담보권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³⁾ 이러한 내용은 담보경매의 일반원칙이므로 비록 담보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 제122조에서는 질권설정 이전에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이 경매이전되어도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다만 특허권자는 양수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58조도 같다). 선순위담보권 이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양수하도록 하는 담보경매의 원칙과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보이는바,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경락되어 상실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은 보유토록 하여 특허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시설이나 설비 등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시설이나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인다.

그러나 경락인으로 하여금 통상실시권의 제한을 받는 지식재산권만을 양수하도록 할 경우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권자의 지식재산권 경매를 통한 채권만족이 제한된다는 점, 특허권이 경락될 정도의 상황에서 기타 시설이나 설비의 존속여부도 매우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담보설정 이전부터 라이선스설정계약을 통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살펴보

12) Ibid., para. 241.

13) Ibid., para. 240.

는 바와 같이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라이선시의 권리는 계속 보호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허법 122조를 통한 특허권자의 보호가 계속 필요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라이선스설정계약

입법지침과 부속서는 권고 제148조에서 담보권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nemo dat* 원칙의 제한하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설정계약 체결을 통한 담보권의 실행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마치 채권담보의 경우와 같이 담보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대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라이선시로부터 로열티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¹⁴⁾

담보법에는 이러한 실행방법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에서는 라이선스 설정을 통한 실행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규정들이 있다(특허법 제121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56조, 상표법 제62조, 저작권법 제47조 제2항, 반도체배치설계법 제16조 제1항 등). 특허법 제121조에서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담보설정자의 경우 담보권자는 교환가치만을 누릴 수 있을 뿐 그 활용가치는 여전히 채무자인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다는 담보법상의 원칙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에는 특약에 기한 예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넓게 해석할 경우, 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는 담보권자로 하여금 라이선스설정계약 체결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을 실

14) UNCITRAL, op. cit.(note 3), Recommendation 168 (Enforcement of a security right in a receivable) The law should provide that, in the case of a receivable assigned by an outright transfer, subject to recommendations 117-123 (chapter VII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ird-party obligors), the assignee has the right to collect or otherwise enforce the receivable. In the case of a receivable assigned otherwise than by an outright transfer, the assignee is entitled, subject to recommendations 117-123, to collect or otherwise enforce the receivable after default, or before default with the agreement of the assignor.

시도록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라이선스로부터 로열티를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담보권자로서는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방법보다 지식재산권을 실시 또는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채권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채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담보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라이선스설정계약을 통한 실행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4. 라이선서의 권리의 실행

담보법의 지식재산담보권 특례부분과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이 로열티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라이선서의 로열티 수령권한을 별도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실행방법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개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이선서의 로열티 수령권한은 별도의 지명채권에 해당하므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전체로서의 지식재산권과는 별개로 라이선스설정계약에 기한 라이선서의 입장에서 로열티 수령권한만을 구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럴 경우 담보법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로열티 수령권한에 대한 담보제공과 실행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지침과 부속서의 내용 참조하여¹⁵⁾ 추후 담보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라이선서는 로열티 수령권한 외에 라이선시의 서브라이선스 설정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리나 라이선시의 담보권 설정을 제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고 있

15) UNCITRAL, op. cit.(note 2), paras. 91, 92, 97.

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로열티 수령권한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명시적으로 담보 대상에 같이 포함되지 않는 한 로열티 수령권한에 대한 담보권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5. 라이선시의 권리의 실행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와의 라이선스설정계약을 통하여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서브라이선서로서 서브라이선스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서브라이선서로부터 서브로열티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중 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자체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고, 서브로열티의 수령권한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라이선서의 로열티 수령권한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¹⁶⁾

6.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유형자산의 실행

지식재산권 소유자 특히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0조). 따라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유형자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통제가 가능하며, 결국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자 역시 그 실행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⁷⁾

한편 이러한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은 유형자산에 활용된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담보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식재산권 자체도 담보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유형자산과 구분한 후 명시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¹⁸⁾

16) Ibid., para. 106.

17) Ibid., para. 245.

Ⅲ.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순위

1. 개관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의 실행 과정에서 담보권자와 경합채권자들(competing claimants) 사이에 누가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지식재산담보권과 관련하여서는 담보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담보권자와 지식재산권 양수인 또는 라이선시 사이의 우선순위, 담보권자와 판결상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등이 문제된다.¹⁸⁾

2. 담보법 규정

담보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담보권과 질권 순위는 등록 선후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에의 등록 시점이 우선순위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한편 담보법 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2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72조, 제217조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담보법에서는 지식재산담보권 실행 관련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포괄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 사례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의 규정들에 입각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별로 입법지침 및 부속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지식재산담보권 우선순위의 해석 방향을 모색해본다.

3. 담보권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담보권자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담보법 제5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에 누가 먼저 담보권을

18) Ibid., para. 248.

19) Ibid., para. 175.

등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담보법 규정만으로도 해석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입법지침과 부속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마련된 공적장부와 별도로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권을 포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일반담보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²⁰⁾ 담보법에서는 지식재산담보권의 등록은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공적장부에 이루어지도록 하면서(제58조 제1항), 동산담보와 채권담보에 대해서는 인적평생방식으로 등록되는 별도의 담보등록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제47조 제1항), 이러한 동산담보와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등록부 방식이 일반담보등록부 방식이다.

결국 지식재산담보권과 관련하여 일반담보등록부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담보등록부와 관련된 우선순위의 이해는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나, 추후 담보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모든 지식재산담보권을 포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일반담보등록부 방식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우선순위에 관한 입법지침과 부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지침과 부속서에 의하면, 권고 제76조 (a)에서 일반담보등록부에 등록된 지식재산담보권을 사이는 그 등록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권고 제77조 (b)에서는 특별담보등록부에 등록된 지식재산담보권을 사이는 역시 그 등록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권고 제77조 (a)에서는 일반담보등록부와 특별담보등록부에의 등록이 모두 가능한 경우 특별담보등록부에 등록된 지식재산담보권은 그 등록선후를 불문하고 일반담보등록부에 등록된 지식재산담보권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²²⁾

20) Ibid., paras. 130, 131.

21) UNCITRAL, op. cit.(note 3), Recommendation 77 (Priority of a security right registered in a specialized registry or noted on a title certificate) The law should provide that a security right in an asset that is made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by registration in a specialized registry or notation on a title certificate, as provided in recommendation 38 (chapter III on the effectiveness of a security right against third parties), has priority as against: (a) A security right in the same asset with respect to which a notice is registered in the general security rights registry or which is made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by a method other than registration in

4. 양수인 또는 라이선시와의 우선순위

1) 원칙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설정 전에 이미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설정한 경우, 그 후 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담보설정받은 담보권자는 담보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담보권을 갖지 못하거나(양도의 경우), 라이선스설정계약의 제한하에 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라이선스의 경우) 해석할 수 있고, 입법지침과 부속서도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²³⁾ 따라서 선순위 라이선스설정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실행은 불가능하고, 라이선시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만 실행이 가능하다.

반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설정 후에 양도나 라이선스 설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시 담보법 제5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후순위인 양수인이나 라이선시는 담보권의 제약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라이선스실시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권이 있는 담보권자가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처분할 경우 후순위 양수인의 지식재산권 자체 또는 라이선시의 라이선스 자체가 소멸하게 되고, 이들의 권리를 담보자산으로 제공받은 양수인이나 라이선시의 담보권자의 담보권도 소멸하게 된다.

입법지침과 부속서 역시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권고 제79조에서는 일반담보등록부만 있는 경우 일반담보등록부에 지식재산담보권을 등록한 담보권자는 그 이후 권리를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양수인이나 라이선시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본문에서는 특별담보등록부 담보권자는 지식재산담보권을 등록한 이후 권리를 획득한 지식재산권 양수인이나 라이선시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담보등록부와 일반담보등록부 모두

a specialized registry or notation on a title certificate, regardless of the order.

22) UNCITRAL, op. cit.(note 2), paras. 181, 182.

23) Ibid., para. 186.

등록 가능한 경우 특별담보등록부가 일반담보등록부에 우선하는 원칙을 반영하여, 제78조 단서에서는 특별담보등록부가 있음에도 일반담보등록부에만 지식재산담보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이후 권리를 획득한 양수인과 라이선시가 일반담보등록부 담보권자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²⁵⁾

2) 예외

입법지침과 부속서에서는 선순위 담보권자가 그 이후 권리 취득한 양수인과 라이선시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권고 제80조 (a)에서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제한 없는 양도나 라이선스설정계약을 채무자인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허가한 경우에는 후순위 양수인과 라이선시가 담보권의 제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⁶⁾

나아가 권고 제81조 (a)에서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통상적 사업활동에 기한 양도의 경우로서 양수인이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침해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권고 제81조 (c)에서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의 통상적 사업활동에 기하여 라이선시가 통상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라이선시가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침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양수인 또는 라이선시가 담보권의 제한 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⁷⁾

따라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치 양수인이나 라이선시가 선순

24) UNCITRAL, op. cit.(note 3), Recommendation 78. The law should provide that, if an encumbered asset is transferred, leased or licensed and, at the time of transfer, lease or licence, a security right in that asset is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by registration in a specialized registry or notation on a title certificate, as provided in recommendation 38 (chapter III on the effectiveness of a security right against third parties), the transferee, lessee or licensee takes its rights subject to the security right, except as provided in recommendations 80–82. However, if the security right has not been made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by registration in a specialized registry or notation on a title certificate, a transferee, lessee or licensee takes its rights free of the security right.

25) UNCITRAL, op. cit.(note 2), para. 184.

26) UNCITRAL, op. cit.(note 3), Recommendation 80. The law should provide that: (a) A security right does not continue in an encumbered asset that the grantor sells or otherwise disposes of, if the secured creditor authorizes the sale or other disposition free of the security right.

27) Ibid., Recommendation 81. The law should provide that: (a) A buyer of a tangible asset (other

위인 경우와 같이,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실행은 할 수 없고 라이선스가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로열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만 실행을 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예외가 논의된 이유는, 최종사용자 라이선스계약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나 공급업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선순위 담보제공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예외의 적용이 없을 경우, 일반 소비자인 최종사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선순위 담보실행으로 인하여 갑자기 소멸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구매과정에서 개발자나 공급업자들이 선순위 담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회의과정에서 회원국들의 공감대 이루어졌으나, 다만 통상적 사업활동이라는 개념은 영미법계에서 상법이나 담보법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권고 제81조 (c)의 지식재산권담보권에의 적용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권고 제245조를 부속서에 채택하였다.²⁹⁾

권고 245조: 권고 제81조 (c)는 담보관련법상의 담보권자의 권리에만 적용되고, 지식재산권 관련법상 담보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³⁰⁾

이러한 예외는 우리나라의 담보법이나 지식재산권 관련법규에 전혀 없는 내용이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담보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그 채택여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an a negotiable instrument or negotiable document) sold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seller's business takes free of a security right in the asset, provided that, at the time of the sale, the buyer does not have knowledge that the sale violates the rights of the secured creditor under the security agreement; (c) The rights of a non-exclusive licensee of an intangible asset licens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licensor's business are not affected by a security right in the asset, provided tha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licence agreement, the licensee does not have knowledge that the licence violates the rights of the secured creditor under the security agreement.

28) UNCITRAL, op. cit.(note 2), paras. 193-195.

29) Ibid., para. 203.

5. 라이선서 담보권자와 라이선시 담보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원칙적으로 라이선서의 담보권자와 라이선시의 담보권자는 서로 다른 로열티 수령권한에 대한 담보권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라이선시가 자신이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신이 서브라이선서로서 서브라이선시로부터 지급받을 서브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라이선서에게 양도한다면, 라이선서의 담보권자와 라이선시의 담보권자 간에 우선순위경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에 관하여 입법지침과 부속서는 권고 제31조를 통하여, 라이선시가 서브라이선스설정계약 체결 전에 장래의 서브로열티를 이미 라이선서나 그 담보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이후 라이선시의 서브로열티 수령권한에 대하여 담보설정받은 라이선시의 담보권자는 라이선서나 그 담보권자의 제한하에 서브로열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고, 반면 라이선시가 이미 장래의 서브로열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후 서브로열티의 수령권한을 라이선서나 그 담보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의 양도는 라이선시 담보권자의 제한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¹⁾

6. 판결상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입법지침과 부속서는 권고 제84조를 통하여, 판결상 채권자가 지식재산권을 양도 받거나 특별담보등록부에 이러한 권리를 등록하면 그 이후 제3자 대항력을 취득한 담보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³²⁾

그러나 위의 권고는 선순위 가압류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과의 안분배당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담보법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므로, 단순히 지식

30) UNCITRAL, op. cit.(note 3), Recommendation 245 (Priority of rights of certain license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law should provide that the rule in recommendation 81, subparagraph (c), applies to the rights of a secured creditor under this law and does not affect the rights the secured creditor may have under the law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31) UNCITRAL, op. cit.(note 2), para. 214.

32) Ibid., para. 219.

재산담보권과 관련되어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 담보법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한 금융기회의 확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지식재산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까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담보법은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들의 준용과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필자는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별로 담보법,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입법지침, 부속서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담보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 및 개정방향까지 제시하였는바, 핵심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제안에 기초하여 앞으로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실무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러한 논의들이 추후 담보법 지식재산담보권 부분의 개정과 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① 사적처분을 통한 실행: 실행방법으로서의 처분과 관련하여 현행 담보법은 법원의 경매만을 인정하고 사적인 처분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지식재산담보권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사적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라이선스설정을 통한 실행: 현행 담보법에서는 담보권자가 라이선스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관한 명시적 규정 두고 있지 않으나, 특허법 관련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실행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③ 로열티 수령권한 담보제공: 로열티의 수령권한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이의 대금이나 수익으로서 같이 실행의 대상에 포함

되나, 로열티 수령권한 자체도 별개의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담보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유형자산의 담보실행: 지식재산권이 활용된 유형자산은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이 없는 이상 담보권자가 그 실행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⑤ 일반담보등록부와의 우선순위: 특별담보등록부인 지식재산권별 공적장부만을 인정하는 현행 담보법하에서는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담보권을 포괄하여 등록하는 일반담보등록부에 등록된 권리들과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일반담보등록부의 창설 논의가 시작될 경우 등록부 간 우선순위에 관한 입법지침과 부속서의 내용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⑥ 통상적 사업활동에 기한 우선순위 예외: 선순위 담보권은 후순위 양수인이나 라이선시에 원칙적으로 우선하나, 입법지침과 부속서는 담보권자가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 또는 통상적 사업활동에 기하여 양수받거나 통상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담보권자의 권리침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순위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최종사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담보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학술지〉

정창호, “제17차 UNCITRAL 담보부거래 분야 실무작업반 회의 참가보고서”, 국제
규범의 현황과 전망, 법원행정처.

〈해외 단행본〉

UNCITRAL,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2007.

UNCITRAL,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2010.

Proposals to Improve the Enforcement and Priority of a Security Right in Intellectual Property

Chang-ho CHUNG

Abstract

Republic of Korea enacted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n 2010 and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is also governed by this Act. By allowing registration of two or m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ed as security for the same credit, this Act enhances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security for credit and allows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to make credit more easily at a lower cost. This Act also provides that, among security rights in the same intellectual property, the right registered first has priority.

But this Act does not have further provisions with respect to the enforcement and priority of the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provisions of security rights in movable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he UNCITRAL has adopted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d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y are providing guidance with respect to the creation, effectiveness against third parties, registry system, priority and enforcement of the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Legislative Guide and Supplement of the UNCITRAL would be very much useful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with respect to the enforcement and priority of the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more,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adoption of the extrajudicial disposition, rights to the payments of royalties, and concept of ordinary course of business.

Keywords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nd priority,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extrajudicial disposition, rights to the payment of royalties, ordinary course of business